

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(제2차 교육위원회) 2021. 11. 23.(화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

###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#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O 제출일자: 2021년 11월 17일

O 회부일자: 2021년 11월 19일

#### 3. 제안이유

O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일반 행정기관 및 타 시·도교육청과의 형 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4. 주요내용

○ 일·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근무 1회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당직(일·숙직) 근무를 하는 경우 실비보상 차원에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을 1회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당직수당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충청북 도교육청 본청(1회 2명 근무)과 10개 교육지원청(1회 1명 근무)이고, 추가 소요액은 연간 5,800만원 정도임.

○ 현재 전국 시·도교육청과 도내 다른 행정기관의 당직수당 금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.

(난위: 전															: 전원)	
	전국 시·도 교육청															충북
서 울	부 산	대구	인 천	광주	대 전	울 산	세 종	경 기	강 원	충남	전 북	전 남	경북	경남	제 주	도청
50	<u>60</u>	50	50	50	50	<u>60</u>	50	60	50	<u>60</u>	50	<u>60</u>	50	50	<u>60</u>	60

○ 전국 시·도교육청과 도내 다른 행정기관의 당직수당 지급 금액에 비추어 볼 때, 본 조례 개정안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직 수당을 인상하면서 당직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